

업 무 협 약 서

건설공제조합(이하 건공)과 해외건설협회(이하 해건협)는 대한민국 건설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건설보증 지원확대를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며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한다.

제 1 조 (협약의 내용)

건공과 해건협은 다음 항목들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.

가. 해외건설 관련 각 기관의 정보 공유

- 건공과 해건협은 각 기관이 보유한 해외건설관련 자료, 조합원(회원사)에 대한 정보 등을 상호공유하며, 해외건설 촉진을 위해 활용한다.

나. 개별사업 사업성(리스크) 분석을 보증심사에 활용

- 건공은 조합원의 보증신청 대상공사와 관련하여 해건협에 사업성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조합 보증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.

다. 해외건설협회 해외지부 활용 등

- 건공은 해건협 해외지부에 해건협의 협조를 얻어 조합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, 해건협이 주관하는 시장조사단 참여를 통해 해외발주자 및 금융 기관 등 현지 관계자들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할 수 있다.

라. 해외건설 협회사업에 대한 조합의 지원

- 건공은 조합원의 해외건설 진출 및 건설보증과 관련된 해건협의 정책개발 사업 등에 공동참여 할 수 있다.

마. 해외건설 관련 교육프로그램 공유

- 해건협은 현재 해건협에서 운영중인 해외건설 교육프로그램 중 건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공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.

제 2 조 (협의 조정)

본 협약 내용과 관련하여 양 기관은 추가로 협의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,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시 세부시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 3 조 (발효일 및 유효기간 등)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만료일 1개월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약정의 변경 또는 폐기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, 서명하여 각 기관이 한부씩 보관키로 한다.

2012년 12월 18일

해 외 건 설 협 회 회장 최재덕 

건 설 공 제 조 합 이사장 정완대 